관련된 업무수행 과정에서 인지·획득·공유된 정보 또는 업무상 기밀에 대하여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제5조(효력발생 및 유효기간) 본 협약은 양 기관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, 서면에 의한 별도 이의제기가 없는 한 효력은 지속된다.

제6조(기타) 본 협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거나 협약서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양 기관은 본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빙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대표자가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0 . 3 . 10 .

중랑구

구청장 류 경 기

서울시복지재단
Seoul Welfare Foundation

대표이사 홍 영 준